

의안번호	2208446
의 퇴 인	박정 의원
회 답 일	2025. 3. 11.
추계번호	25F1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점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156조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감면)	○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 신설 - 감면율: 첫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156조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됨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등에게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세제상의 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²⁾(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연도 개시 이후 첫 3년간은 개인지방소득세 100%를,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에 따라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의 숫자 및 개별 기업의 납세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가용 정보가 미비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규정된대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한 사례가 없음
 - 다만,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접경지역에 사업장 신설 또는 공장 신축·증축 현황은 다음과 같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접경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표 1] 접경지역 사업장 신설 또는 공장 신축·증축 기업 수 : 2020~2024년

(단위: 개)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천광역시	옹진군	1	0	2	0	0
인천광역시	강화군	3	4	9	3	2
경기도	파주시	201	199	150	104	142
경기도	김포시	79	151	162	87	74
경기도	양주시	155	158	144	114	160
경기도	포천시	110	155	154	119	92
경기도	동두천시	16	20	9	9	12
경기도	연천군	6	6	3	1	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0	0	1	0	0
계		571	693	634	437	486

자료: 행정안전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